



제382회국회(정기회)

##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10:00
- 장 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본관 406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목 차

- **공청회 개요** ..... 1
  
- **진술 요지**
  -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
  -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 19
  - 최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37
  -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57
  
- **관련 법률안 및 청원**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6.11.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 87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2020.11.12.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101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2020.11.17.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 119
  -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0.9.22. 김미숙 외 100,000인) ..... 137



## □ 공청회 개요

### 1. 목 적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등을 처벌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함.

### 2. 안 건: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 3.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10:00

### 4. 장 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본관 406호실)

### 5. 진술인

- 김 재 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 진 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 최 정 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임 우 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6. 진행순서

-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 진술인 발표(4인)
- 질의 및 답변





# 진 술 서

**김 재 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학 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사(1995)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1998)
-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과대학 석사(LL.M.) (2002)
-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박사(Dr. iur.) (2004)

### □ 경 력

구 분	내 용
주요경력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4. 9 ~ 2007. 9)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 9 ~ 2019. 8. 31.)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 9. 1. ~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2016. 3. 4. ~ 2018. 1. 31.)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2020. 9. 1. ~ 현재)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2018. 2. 6. ~ 2018. 12. 31.)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위원 (2014. 5 ~ 2019.3.31.)
강의분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2017. 9 ~ 2019. 9)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2018. 1 ~ 2020. 1)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의료형법
저서 및 주요논문	.의료분쟁과 법(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15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생명의 형법적 보호,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기업의 형사책임(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마인드맵, 2015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박영사, 2020



# 제21대 국회 중대재해법안에 대한 진술인 의견서

김재윤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I. 진술인의 기본입장

2011년 가슴기살균제 참사(2020년 8월말기준 1,559명 사망), 2014년 세월호 참사(304명 사망·실종),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19세 청년)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sup>1)</sup>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사망자 38명, 실종자 4명, 부상자 10명)<sup>2)</sup> 등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에 달합니다.<sup>3)</sup>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고 2018년 12월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6명의 존귀한 생명이 어제도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존재하는 하는 국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인간 존엄성의 근본 바탕이 되는 생명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한 역할을 했는지요?

---

1) 대전지방노동청은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2018년 12월 26일까지 과태료 1억 원에 해당하는 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찾아냈고, 이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재석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 회회를 통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은 원진레이온 사고에 따른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C%95%88%ED%99%94%EB%A0%A5%EB%B0%9C%EC%A0%84%EC%86%8C\\_%EC%82%AC%EA%B3%A0](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C%95%88%ED%99%94%EB%A0%A5%EB%B0%9C%EC%A0%84%EC%86%8C_%EC%82%AC%EA%B3%A0) <최종검색일 : 2020.11.30.>

2)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면서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우 측이 개선 요구를 무시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https://namu.wiki/w/%ED%95%9C%EC%9D%B5%EC%8A%A4%ED%94%84%EB%A0%88%EC%8A%A4%20%EC%9D%B4%EC%B2%9C%20%EB%AC%BC%EB%A5%98%EC%84%BC%ED%84%B0%20%ED%99%94%EC%9E%AC%20%EC%82%AC%EA%B3%A0?from=%EC%9D%B4%EC%B2%9C%20%EB%AC%BC%EB%A5%98%EC%B0%BD%EA%B3%A0%20%ED%99%94%EC%9E%AC%20%EC%82%AC%EA%B1%B4> <최종검색일 : 2020.11.30.>

3) 2019년 기준 산업재해자는 109,242명으로 사고재해자 94,047명(86.1%), 질병재해자 15,195명(13.9%)이다. 이 가운데 사고사망자는 855명(0.8%), 질병사망자는 1,165명(1.1%)로 사고 및 질병사망자는 2,020명(전체 산업재해자 대비 1.9%)이다. 이는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이다.

<file:///C:/Users/user/Downloads/%EC%97%85%EC%A2%85%EB%B3%84,%20%EA%B7%9C%EB%AA%A8%EB%B3%84%202019%EB%85%84%20%EC%82%AC%EA%B3%A0%EC%82%AC%EB%A7%9D%EC%9E%90%20%ED%98%84%ED%99%A9.pdf> <최종검색일 : 2020.11.30.>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혹은 노동자의 이익을 이해, 이러한 이분적 사고를 넘어 내 딸, 내 아들, 내 아내, 내 남편 아니 내 자신이 산업현장에서 혹은 공중이용 시설에서 어처구니없이 국가, 법, 제도, 시스템 등의 미비로 인해 존귀한 우주로서의 생명이 사라짐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그 동안 산업재해에 대해 일응 재계에 유리한 판결을 선고해온 사법부는 오늘 이 공청회가 개최되는 시간까지 어떠한 입장과 노력을 펼쳐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4월 14일 고 노회찬의원님께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당시 여러 찬반의견이 전개됐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좌파적 시각에 함몰된 터무니없는 법률안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고질적인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다 등등...

진술인은 개인적으로 제21대 국회에서 현재 발의 중인 중대재해법안의 여러 문제점과 관련하여 형법전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지 않으면서 종래 양벌규정과는 또 다른 “법인의 처벌” 규정을 특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4)</sup> 오늘 이 시간에도 산업현장 어디선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생명이 소멸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그리고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든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Those responsible for creating the risk must take ownership of it)”는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만큼은 중대재해법안이 반드시 입법화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기본적 입장을 바탕으로 현재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세 개의 중대재해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sup>5)</sup>

## II. 중대재해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 1. ‘기업살인법’인지 ‘중대재해법’인지 여부

오늘날 대부분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김재윤, 기업의 형사책임, 마인트랩, 2015 참조.

5) 2020.6.1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강은미의원안’), 2020.11.1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박주민의원안’), 2020.11.17.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이탄희의원안’).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단순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법인)범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년간 논의 끝에 2007년 7월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이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여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이 법률은 기업, 경찰조직을 포함한 일정한 공공기관, 조합(partnership), 경영자 협회 등 단체(organisation)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그 자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sup>6)</sup> 예컨대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청해진해운에게 적용할 경우 법원은 청해진해운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아니라 304명의 승객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어 적어도 연매출액 10%의 벌금, 공표명령, 구제명령 등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sup>7)</sup> 사람의 생명은 영국인인가 한국인인가를 불문하고 언제나 존엄한 가치를 가지는데 다수의 생명을 잃게 한 기업에 대해 형사법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나 상이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은 생명존중을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규정한 헌법국가에서 용인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사업장의 운영에 요구되는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뿐만 아니라 기업(법인)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법인)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대재해법안의 명칭과 관련하여 2013.12.24. 김선동의원외이 대표발의한 「기업살

---

6)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김재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2014, 181면 이하 참조.

7)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과실선박기름배출)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인처벌법안」과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아닌 ‘기업살인법’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에 의해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사망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Corporate Manslaughter”, “Corporate Homicide”, “Corporate Killing”을 ‘과실치사’보다는 기업범죄에 의한 생명침해를 보다 더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살인’의 용어로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 개의 중대재해법안에서 기업(법인)처벌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에 의해 노동자를 살해하는 일반적 ‘살인’죄가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의무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고의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합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과실범을 포함하고 있으므로,<sup>8)</sup> 중립적인 표현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법’안으로 명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2.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법안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실효성이 없을 것인지 여부

중대재해법안이 입법화 되었을 경우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된 이후 영국에서 실제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기업과실치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기업은 26곳에 불과하고, 그 사이 산업재해 사망자 1,382명과 비교하면 채 2%도 안 됨을 이유로 기업과실치사법이 중대재해 예방에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죄 선고된 26곳의 기업도 중견기업 이상으로 분류된 곳은 항공부품 업체 CAV에어로스페이스(CAV Aerospace) 한 곳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sup>9)</sup>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영국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그 위반에 따른 처벌의 핵심이 되는 법률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아닌 1974년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이하 HSWA)」으로, 이미 “상한 없는 벌금 조항”과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sup>10)</sup>의 안전감독관에게 기소권과 작업중지 명령권을 가지고 안전·

8) 강은미의원안 제6조(법인 등의 처벌), 박주민의원안 제7조(법인의 처벌), 이탄희의원안 제7조(법인의 처벌) 참조.

9) 시사저널 2010.1.22.자 기사: “누구도 말하지 않은 ‘기업살인법’의 불편한 진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709> <최종검색일 : 2020.11.30.>

보건조치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안전법」으로 산업재해가 여전히 예방되지 아니하고 기업에 의한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고자 보충적으로 도입한 것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예방과 그 위반에 따른 처벌에 있어 과연 영국의 「보건안전법」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1974년 「보건안전법」을 보충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4월 영국 에식스(Essex)에서 63세 노동자 니콜라이 발코프가 창고 지붕을 수리하던 중 추락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는 창고 소유 기업 오즈딜 인베스트먼트(Ozdil Investments)의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하청업체 코서글루 메탈워크(Koseoglu Metal Work)는 건물 수리 경험이 전혀 없는 철강업체로 드러났으며, 지역 보건안전청 등에서 지붕 수리 작업의 위험성이나 안전망 설치 같은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경고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한 채 수리를 진행했고, 작업 현장에 대한 위험 평가나 작업할 노동자에 대한 훈련도 없이 수리 작업을 하던 중 니콜라이 발코프가 지붕의 채광창을 밟아 추락했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업체는 「보건안전법」과 기업과실치법 위반으로 총 80만 파운드(약 12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청 오즈딜에는 50만 파운드(약 7억 5천만 원), 하청 코서글루엔 30만 파운드(약 4억 5천만 원)의 벌금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원·하청 관계없이 ‘위험을 만든 주체’로서 처벌받은 것입니다.<sup>11)</sup> 이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도급금지는 도급작업이나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뿐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그 밖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같은 법 제5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는 그 대상을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으로 한정했습니다. 중대재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규정<sup>12)</sup>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관

10) 영국에서 보건안전을 총괄하는 HSE는 HSC(Health and Safety Commission)와 더불어 보건안전법(HSWA : the Health and Safety Act 1974)에 의해 설립된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영국의 보건안전관을 총괄하는 최고위 책임 공공기관(Crown Non-Departmental Public Body)이다.

11) 박진욱, “영국과 미국은 기업주를 처벌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 2018봄호, 2018.5.  
<http://laborhealth.or.kr/33720> <최종검색일 : 2020.11.30.>

12) 강은미의원안 제4조, 박주민의원안 제4조, 이탄희의원안 제4조 참조.

계없이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든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 시킨 영국의 2007년 과실치사법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2007년 과실치사법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물론 있지만, 기업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공공재해’는 물론이고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재해예방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상당한 범죄억지력을 발휘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sup>13)</sup>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은 기업의 과실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들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고,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적합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해 안전기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sup>14)</sup>

### 3.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은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벌규정<sup>15)</sup>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만으로 한정하고 사업주와 직접위반행위자만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 규정일 뿐 기업(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사실상 이사,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sup>16)</sup> 등 기업(법인)의 실질적 활동방침과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법인)의 고위관리자로서 경영책임자가 탈·불법경영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직접 행위자로서 하지 않은 경우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 규정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sup>17)</sup>

13) Law Commission(1996), Report 237.

14) N. Gunningham and R. Johnstone, Regulating Workplace Safety: Systems and San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1999).

15)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16)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은 2011.4.14. 개정 상법(2011.4.15. 시행) 제408조의2, 제408조의5로 신설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3대정판), 박영사, 2009, 714면 이하 참조.

17) 이러한 양벌규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예컨대 2007년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한국타이어의 대전공장 과금산공장에서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



이러한 현행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안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안전·보건조치의무 내지 유해·위험방지의무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sup>18)</sup>

이러한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의무위반자인 직접행위자와 기업(법인)인 사업주만을 처벌하면 충분하지 사고현장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지 아니한 일반적, 추상적인 관리·감독상의 과실을 근거로 기업(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 등까지 처벌하는 것은 결과책임의 잔재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을 심각히 제한하는 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적합하지 않는 반기업적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인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할 때 10억 원 이하인 인 점에 비추어 보아 일반예방효과와 특별예방효과라는 형벌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에 미흡하다는 점, (대)기업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소장 등을 선임·감독하여 이들과 기업(법인) 자체에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지만 개인 사업주의 경우 별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소장 등을 선임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면책규정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이어서 거의 예외 없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현행 형법해석론상 법인의 범죄능력이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론적 차원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기보다 개인책임원칙에 따라 기업(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양벌규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 내지 유해·위험방지의무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고 자기책임원칙을 바탕으로 한 형벌의 부과로 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4.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도한 정부 규제인지 여부

였는데, 그 중 7명이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에 대해 2009년 8월 14일 대전지방법원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타이어 이모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여 공장장, 연구소 부소장 등에게 형사책임을 물었을 뿐, 직접행위자가 아닌 한국타이어의 경영진에 걸쳐 포괄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한 기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김재윤,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40호, 2011, 395면 이하 참조.

18) 강은미의원안 제3조, 제4조, 박주민의원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이탄희의원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참조.

강은미의원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한 유형의 과실범 내지 안전의무 위반범에 대한 법정형에 비추어 법정형이 높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sup>19)</sup>

<표1> 중대재해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법정형과 과실범의 법정형 비교

제정안 제5조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 사망	3년 이상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 상해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치사상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사망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먼저 중대재해법안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다는 입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입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된 책임을 일반적인 ‘과실범’ 책임으로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안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은 고의로 안전·보건조치의무 내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통해 중한 결과로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입니다. 이러한 진정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를 고의로 행하였다는 행위반가치의 중대성으로 인해 과실범의 법정형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진정결과적가중범인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를 범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또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죄 역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19) 허병조,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20.7.19면.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이러한 두 죄의 법정형은 하한에 있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처벌 규정의 법정 하한형과 동일하고 상한형은 무기징역형으로 훨씬 중합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치사죄는 동일한 진정결과적가중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은 규정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에서 38명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중대재해법안 제정 이후에 발생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경영책임자 등에게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현행 형사법 체계상 과도한 법정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안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은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10억 원 이하로 2배나 높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은 중대재해를 예정한 처벌규정이 아니고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기 전까지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액은 1억 원 미만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게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 원으로 극히 낮은 수준이어서 형벌로서의 일반예방효과를 거의 거둘 수 없었습니다.

<표2> 중대재해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법정형과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법정형 비교

제정안 제5조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 사망	3년 이상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 상해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죄	3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특가법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치사죄	3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죄	5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교통방해치사죄	3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한 앞서 언급한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상한없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안상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다만 영국에서도 기업과실치사법에 따른 벌금형의 선고가 실제로는 기업의 매출액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3년 1월 영국 캠브리지 공항에 있는 CAV에어로스페이스(CAV Aerospace)의 한 창고에서 하도급 노동자 폴 바우어스(사망 당시 47세)가 수 톤 짜리 비행기와 맞먹는 무게의 알루미늄 건축자재들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이 창고 안전관리에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를 직접 진행한 영국 보건안전청도 “이 사고는 완벽한 인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0년 세워진 CAV 에어로스페이스가 법원의 유죄선고에 따라 선고된 벌금과 비용 등은 모두 합쳐 72만5,000파운드(12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5년 3월 경영진이 회사를 투자기업 베타캐피탈(Better Capital)에 팔고 받은 돈 4,800만파운드(808억 원)의 1.5% 수준이고, 사고 당시 최고경영자(CEO) 오언 데이비드 맥팔랜(Owen David Mcfarlane)의 개인자산 5,650만파운드(951억 원)와 비교하면 1%를 겨우 넘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이에 영국은 2016년에 변경된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 양형지침에서 “벌금액은 반드시 경영진 등이 산업안전 관련 법률 준수 필요성을 가지도록 회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징벌적이고 충분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벌금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sup>20)</sup>

## 5. 인과관계 추정규정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박주민의원안과 이탄회의원안 제5조는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경범죄단속법’)」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와 건강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2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 방안 회의 자료집, 2020.5.7., 165면.

근란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처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sup>21)22)</sup>

주지하듯이 환경오염물질의 간접적이고 완만한 유입, 환경오염물질의 이동경로의 확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다양성, 그로 인한 오염원인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때 형사증거법상의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의 원칙이라든가 ‘무죄추정의 원리’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중대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 추정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상 추정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원칙이라든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상 추정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견해,<sup>23)</sup> 형사처벌의 강화를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 이외에는 그 이론적·현실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과학적인 수사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추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활용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견해<sup>24)</sup>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환경범죄에 대하여 인과관계의 추정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 안에서도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선 기업(법인)에 의한 중대재해는 그 원인이 기업 내의 자연인에 의한 안전·보건조치의 직접적인 위반으로 기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나 조직구조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인과관계를 자연인을 중심

21) 환경범죄단속법 제11조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22) 환경범죄단속법 이외의 다른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한 예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등을 언급할 수 있다.

23) 박정식, “환경사범의 인과관계”, 검사세미나 연수자료집 11, 법무연수원, 1992, 385면.

24) 장영민, “환경형법의 이론상 문제점”, 환경범죄의 실태와 규제방안 제9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45면.

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 사실상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건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정당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당해 사고 이전 의무위반 사실이 3회 이상이 확인되거나 증거물을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그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중대재해 발생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때’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죄추정의 원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요구되는 이러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남아 있으므로 이 규정은 완전한 의미의 법률상 추정이나 거증책임 전환이라기보다는 ‘입증책임 완화’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여겨진다는 점, 중대재해법안은 미수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대재해법안의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은 독립행위의 경합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9조를 배제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sup>25)</sup>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세 가지 중대재해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은 더 이상 중대재해법안에 대해 정부의 규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가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인 걸 깨달아야 한다”는 영국 보건안전청의 니콜라스 릭비 수석감독관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25) 김재윤, “현대형법에 있어 거증책임전환의 허용한계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제86호, 2005, 135-136면.



# 진 술 서

정 진 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 □ 학 력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 수료,  
치과대학(본과) 2년 수료 자퇴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행정학)
- 고려대학교 대학원 노동경제학과 석사 졸업(노동경제학)
- 일본 교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사회법)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졸업(사회법)

### □ 경 력

- 행정고시 합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고용정책실, 노정국 사무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고용정책실 서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과장, 제조산재예방정책과장, 산재예방정책과장
-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장,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
-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교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 I. 들어가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보건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엄벌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임.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법문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어, 수범자에게 행동지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법집행자에 의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해석이 이루어지게 됨. 동 법안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매우 많음
- 지금 현재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이 매우 많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법령에 대한 해설, 지침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처벌에 의존하는 것은,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 채 중소기업 등에 과잉처벌이 집중되는 부작용만 클 것으로 예상됨
- 재해예방 기준과 인프라(여건)는 선진국을 크게 하회하면서 제재는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법안으로서 지나치게 제재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고 생각됨. 현재도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형사처벌수준이 높은 상태이고, 작업중지·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까지를 포함하면 이미 어느 나라보다도 제재수준이 높은 상태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비교법적으로 볼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도 사뭇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어느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음

## II.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도움이 될까 - 입법취지·목적

### 1.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 안전에 관심이 많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안전보건담당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과 산재예방예산을 대폭 늘렸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여 처벌수준을 대폭 높여 행정상의 제재를 포함하면 제재(처벌)도 어느 나라보다도 약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중대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강화된 처벌과 법정책의 주된 대상인 건설업의 경우 2020년 9월 현재 사고사망재해가 오히려 크게 늘어남
- 우리의 논의는 이 질문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 이유로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요건 허술(산업안전보건법 벌칙체계의 엉성함), ② 비현실적 규정의 과다(규범력의 부족), ③ 산재예방행정 전문성의 태부족, ④ 산재예방 인프라의 취약을 지적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로 낮은 법정형을 지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봄. 징역형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이미 높은 편이고, 벌금형(과태료)의 경우 영국, 미국보다는 낮지만, 독일, 일본보다 낮은 것은 아님. 게다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명령, 전면 작업중지명령 등의 행정제재와 과태료까지를 포함하면 법정 제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다고 볼 수 없음
- 엄벌주의가 안전보건범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음. 아랍권, 중국, 북한 등의 형벌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만약 엄벌주의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입증되었다면 많은 국가에서 엄벌주의 접근을 채택하였을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의 다발을 법정 제재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 다만, 책임 있는 경영자가 처벌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음. 즉 제재 자체의 미약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처벌(제재)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됨
- 본 진술인은 위 4가지 요인이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정의로운’ 처벌(‘강한’ 처벌이 아님)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 이 4가지 요인이 개선되지 않고는 처벌수준을 올리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됨. 즉, 부작용과 혼란을 많이 초래하면서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기강, 의지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편향, 즉 처벌만 강하게 하면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살인, 절도, 폭행과 같이 그 행위의 반도덕성·반사회성이 당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실정법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형사범(자연범)’의 경우에는 이것이 통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반도덕성·반사회성이 당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이전에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당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에 의해 비로소 범죄로 인정되는 ‘행정범(법정범)’의 경우, 특히 산업안전보건과 같은 전문적·기술적 성격이 강한 분야의 범죄의 경우에는 기강, 의지만으로는 범죄의 발생을 줄이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준수할 수 있는 법규정과 이에 대한 안내(해설)기준을 충실히 만드는 한편, 이를 잘 준수하도록 다각적으로 충분히 지도·홍보를 하는 노력을 한 후, 그럼에도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 확실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임. 다시 말해서, 전자(올바른 법규정과 안내기준 및 지도·홍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법정형을 올린다고 하여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도저히 준수할 수 없는 법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안 지키겠다고 강하게 처벌하는 접근방법으로는 산재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법치주의에도 부합하지 않음
- 행위의 당벌성을 넘어 서는 ‘위험의 외주화’ 프레임에 입각해서 과도하게 부과된 형벌은 헌법의 원칙에 해당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헌법의 원칙은 민주주의 원리이자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지켜야 할 철칙임

## 2. 경영자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올바른 접근인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보건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엄벌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임.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헌법의 원칙(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원칙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중대재해)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됨
- 법문이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수범자가 당해 법률에 정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여도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도저히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수범자에게 행동지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법집행자에게도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지 못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해석이 이루어지게 됨. 법문이 가벌적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술해야만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행정기관에서도 장래의 행동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됨.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적지 않아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법의 실효성, 즉 산업재해 감소에도 효과를 주기는커녕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큼

- 지금 현재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불명확한 규정이 매우 많고, 비현실적인 규정도 적지 않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법령에 근거한 해설, 지침도 턱없이 부족한(그 결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차고 넘치는) 상태에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예방기준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고 예방인프라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처벌)에 의존하는 것은 산업재해(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에게 과잉처벌이 집중되는 등의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엄벌주의를 채택하지 않고도 훌륭한 안전성적을 거두고 있는 국가(독일, 일본, 북유럽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처벌 강화만이 유일한 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균형 잡히거나 종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없음. 예방기준은 규범력 관점에서 선진국의 기준을 크게 하회하면서 제재는 영국을 포함한 어느 선진국보다도 처벌수준을 강하게 하는 것(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 포함)은 많은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면서 산업재해 예방효과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선진국 어느 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형사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일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수사하는 예를 발견할 수 없음. 결국 영국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임
- 공장과 본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보다 강한 처벌에 더 쉽게 노출되게 됨
- 대기업의 경우 공장장 등과 같이 현장에 있는 경영자(사장이 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포함)는 현재도 처벌되고 있고, 이들의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강한 처벌에 더 쉽게 노출될 것임
- 공장 등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본사의 경영자가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의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대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체계가 영성하게 규정되어 있어 대기업 경영자에 대한 위하력이 없는 것이지, 산업안전보건법이 본래 대기업의 경영진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님.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위반에 대해 현재 과태료로 되어 있는 것을 형사처벌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 장철민 의원 산안법 개정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등 내용적으로도 턱없이 부족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경영자라는 개인을 처벌하려고 하다 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내용 및 집행 면에서 중복될 뿐만 아니라, 많은 법리적 문제가 초래될 것임

※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 법인에 대해서만(경영자 개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산업안전보건법과 확연히 다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 내용 및 집행에서 중복되지도 않고 법리적 문제에 대한 시비도 발생하지 않고 있음

### Ⅲ. 법안의 구체적 검토

#### 1. 강은미 의원안

##### <적용대상>

-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영세사업자, 가족경영사업자,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임대인, 사외도급인 등도 적용대상이 되는 관계로 이들이 주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제2조(정의)

- 중대재해의 정의가 범죄구성요건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준하는’ 재해”라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 ‘경영책임자 등’에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표현 또한 범죄구성요건임에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 달리 말하자면 애매하고 불분명하여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이고 국가형벌권 생사의 예측가능한 한계선이 지켜질 수 없는 표현이어서 집행기관과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쉽게 개입할 수 있음 (명확성의 원칙 위반)
- 수범자에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행동기준을 전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음. 즉 수범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허용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됨. 이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상실됨
- 일반인이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 즉 의사결정규범·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가를 국민에게 확실히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범문을 구체화하여야 하는데,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막연하여 구성요건상 행위의 윤곽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이 실행가능성, 통제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형사책임(제5조, 제6조)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

### 제4조(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 달리 말하자면 애매하고 불분명하여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이고 국가형벌권 생사의 예측가능한 한계선이 지켜질 수 없는 표현이어서 집행기관과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쉽게 개입할 수 있음 (명확성의 원칙 위반)
- 수범자에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행동기준을 전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음. 즉 수범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허용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됨. 이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상실됨
- 사외납품(제작도급), 기계·설비의 임대, 단순배달 등과 같이 도급·위탁업체가 수급·수탁업체에 대해 물품의 제조·서비스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거나 지배·관리 가능성이 없는데도(기계·설비의 소유주이지만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소유주가 이에 대해 통



제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음), 도급·위탁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동 의무의 위반 시 형사책임(제5조, 제6조)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

###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본조의 범죄구성요건에서 (고의의) 기본행위의 대상인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제3조 및 제4조의 의무)는 형법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규정에 해당하는바, 이런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실상 결과책임을 인정하게 될 소지가 큼(책임주의 원칙 위반)
- 동법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그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함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실상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대해(특별법으로 별도 규율하여야 할 법적 근거, 즉 구성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채) 중복적으로, 정확하게는 이를 배제하는 형식으로 특별형법으로 처벌하는 입법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음
  - ※ 본조의 처벌조항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결과적 가중범 조항의 구성요건이 사실상 동일한 상황에서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결과적 가중범 조항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큼
- 행정형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일반경찰에게 수사(원인조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비전문성을 조장하고 해당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만들어진 특별사법사경찰 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음(행정전문성의 퇴행 초래)
- 준수 의무(위반내용)를 주로 산안법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사상자 발생 시 동일한 내용을 일반경찰과 특사경(근로감독관)이 중복적으로 조사·수사하게 되어 국가적으로 큰 낭비와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의무위반(동일한 범죄구성요건)과 사망이

라는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규범적 근거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수준보다 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즉, 행위의 당벌성, 불법의 정도(죄질의 경중),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과잉입법으로서 전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과도하게 부과된) 것임

- (제3항)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2명 이상을 사상(사망 1명 +경상 1명도 포함)에 이르게 한 때에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가중하도록 하여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바(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면 징역형의 경우 6년이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됨),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경합범 체계를 달리 하는 것은 전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큼

※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순차로’라는 표현도 이것만으로는 어느 재해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모호하고 막연한 표현임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니, 그 외 근로자·종사자(관리자도 포함),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에게는 유해·위험방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역할과 책임은 계층·부서별로 다르겠지만)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진다는 국제적인 원칙과도 맞지 않고 오히려 사업장의 안전보건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제6조(법인 등의 처벌)

- 본조의 범죄구성요건인 제5조의 위반행위는 제3조·제4조의 위반행위를 가리키는바, 제3조·제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인 등에게 사실상 결과책임을 인정하게 될 소지가 큼(책임주의 원칙 위반)
- 법인 또는 기관의 처벌의 근거는 감독과실(과실범)의 책임인바(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해 과실책임임을 인정하고 있음), (미필적)고의(고의범)로 법을 위반한 개인행위자보다 벌금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과잉처벌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됨
- 처벌대상이 법인 또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과실범에 대해 하한형의 벌금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아 과잉처벌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됨

- 본조 제1항 제1호 또한 고의범을 전제하기 때문에 본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와 문언상의 표현만 다를 뿐 범죄구성요건이 사실상 중복되는바,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을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됨. 그리고 본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경영책임자 등’과 동일한 자이므로 본조 제1항의 단서규정과 제1호 간에도 법리적으로 모순됨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중복수사 및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형해화 문제는 위 제5조 검토내용과 동일
- (제3항)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법원으로 하여금 직접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보편적 피해구제제도라기보다는 보통법(common law)의 전통을 배경으로 한 특수한 제도로서 드물게 부과되고 있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한정된 분야에서 예외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음
- 형사적 제재가 필요함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능을 담당하거나, 민법의 불법행위제도가 불완전하게 집행될 수 있음을 고려한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제도임
- 설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악질적인 침해를 의도하였든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타인의 권리 혹은 이익을 무시하였든지, 고의적이나 악의적인 침해를 의도하였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의식적으로 현저하게 무시한 위법행위 등에 인정될 수 있음
-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즉, 안전보건기준을 고의적 위반하는 경우는 있어도 생명과 건강 침해를 의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산업재해 영역(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호주의 New South Wales 주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징벌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한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음

- 보통법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성문법으로 존재하는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에서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에 추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입법례는 발견되지 않음.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피고가 이미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받은 경우 징벌배상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호주에서도 징벌배상의 목적인 처벌과 역지가 형사소송으로 인해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은 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이 인정된다면, 피고를 이중으로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뉴질랜드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없고 피고의 행위가 이후에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면 징벌배상청구를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것도 중지되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피고가 이미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았는지를 고려함
- 보통법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는 근거는 ① 형사처벌이 마땅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한 결과 실체법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 ② 실체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절차법적으로 기소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검사가 기소에 소극적인 경우, ③ 실체법·절차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처벌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형사법적 처벌 내용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벌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경우 등임. 즉,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이중제재를 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제1항)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영하고 있는 개별국가(영국, 뉴질랜드 등)와 EU 의회(2013년)에서는 과도한 배상을 초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
- (제3항) 입증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는바, 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음

### < 벌칙의 하한형 설정의 문제점 >

- 징역형의 하한형을 설정하는 것은 고의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범이나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상해치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적용하는 형벌부과방식으로서, 안전보건기준 위반과 같이 위반유형(위반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등)이 매우 다양한 범죄에 대해 (미필적)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 발생에 대한 고의성은 없는 범죄에 대한 형벌부과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벌금의 하한 규정은 매우 드물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2019. 12. 24)에서 발견됨. 벌금의 하한선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위반유형이 정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이 가능하지만, 위반유형이 매우 다양한 안전보건기준 위반(안전보건기준과 그 위반에는 경미한 사항도 많음)에 대한 하한선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본조는 추상적 위험범(안전보건기준 위반)의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침해범의 결과적 가중범(예: 상해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불법의 성질이 다름에도, 징역형의 경우 형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하는 것은 과잉처벌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됨
- 비교법적으로 볼 때, 안전보건기준 위반범죄에 대해 하한형을 설정한 입법례는 발견되지 않음. 본법의 모델이 되는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도 하한형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 2. 박주민 의원안(※ 이탄희 의원안은 박주민 의원안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생략)

< 강은미 의원안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강은미 의원안과 다른 내용에 한정하여 검토함 >

### 제2조(정의)

- 범죄 구성요건인 중대산업재해 개념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와 부합되지 않고, ‘사회적 물의’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한 표현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 범죄 구성요건인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전체적으로 모호하고 불명확한 표현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는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 달리 말하자면 애매하고 불분명하여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이고 국가형벌권 생사의 예측가능한 한계선이 지켜질

수 없는 표현이어서 집행기관과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쉽게 개입할 수 있음

- 수범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허용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됨. 이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상실됨
- 일반인이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 즉 의사결정규범·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가를 국민에게 확실히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법문을 구체화하여야 하는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막연하여 구성요건상 행위의 윤곽을 파악하기 어려움
- 수범자에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행동기준을 전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음

#### **제4조(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 안전보건조치의무 대상이 사내도급 외에 사외도급, 임대, 위탁 등의 경우까지 업무를 맡기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도급인·임대인·위탁인 등의 의무내용을 일률적으로 공동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영세소규모업체가 보다 큰 규모의 업체에 사외도급, 위탁하거나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외부의 전문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등에 대해서까지 획일적으로 공동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행위의 당벌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형벌임(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 제1호는 위협방지의무 위반으로 추정되는 것이 당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실이 아니라 과거 5년간 수사기관 또는 행정청에 의해 범위반이 3회 이상 확인된 것을 표지로 하고 있어서 ‘성격책임’ 또는 ‘행위자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행위형법의 원칙’에 위반됨. 즉, 행위자가 행한 개별행위 및 그 결과를 근거로 책임의 인정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책임개념의 핵심(개별행위책임)의 원칙에 위배됨
- 제2호는 당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증거인멸·현장훼손 등의 정황을 발생원인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애초에 인과관계 추정과 무관한 것임
- 당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과 무관한(즉 인과관계와 무관한) 특정 사실·정황을 가지고 ‘인과관계의 추정’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처벌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무죄추정

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큼

#### 제6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제1항) 유기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 (제2항) 유해·위험방지의무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상태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라는 표현 또한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분쟁과 고소·고발 남발이 조장될 우려가 큼

#### IV. 맺으며

-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의도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안전원리, 법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 현장작동성과도 거리가 있으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보편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이자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준수되어야 할 철칙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 측면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와 법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매우 위험해 보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준거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부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상의 문언이 치밀하지도 못하고 엄격하여 이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 수범자에게는 과도한 처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중대기업처벌법을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범죄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을 전제로 법인(조직)으로 규율대상으로 한정한다면 다소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발의된 안과 같은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감소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선진외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의 생사 및 경영자 등의 신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매우 많은 법안이고, 구성요건과 처벌수준에 있어 어느 선진외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인 만큼, 어느 법안보다도 신중한 접근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및 심도 있고 많은 검토·논의가 필수적임





# 진 술 서

**최 정 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 학 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및 동 대학원(석사)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졸업

### □ 경 력

- (전)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전) 국회 입법지원위원
-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현) 한국형사정책학회 인권이사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내용

최 정 학

## I. 머리말

최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운동은 이미 상당히 오래된 것이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기업이 야기하는 다수의 인명피해에 대해서 기업과 기업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몇몇 시민단체의 주장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2014년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결성으로 확대되었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기업처벌법이 구상, 제안되었던 것이다. 피해자 유족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노력을 배경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몇몇 의원들을 통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별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20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제정연대’는 21대 총선을 계기로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미 정의당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시도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과 여기에 원칙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을 간단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의 무지와 시간의 부족으로 혹 정확하지 못한 내용이나 올바르지 않은 서술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그릇되거나 모자란 부분은 추후에 보충하기로 하고, 다만 이 발표가 기업처벌법에 대한 국회와 사회 일반의 관심을 촉진시키고 관련 논의를 활발히 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 II. 재해 통계와 처벌의 실태

### 1. 산업재해

우리나라의 높은 산업재해율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이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의 총 재해자 수는 109,242명이고 사망자는 2,020명이며, 재해율<sup>26)</sup>은 0.58, 사망 만인율<sup>27)</sup>은 1.08에 달한다. 날마다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매년 200명당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산업재해율은 아래에서와 같이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아도 큰 변화가 없다.

26) 재해율 = 재해자수/근로자수\*100

27) 사망 만인율 =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표 1> 우리나라 산업재해율과 재해자수 (2009-2018)



그럼 이렇게 많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기업의 관리자는 얼마나 처벌되고 있을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 통계를 보면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이 약식명령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경우나 법인에 대한 경우가 모두 마찬가지이다. 예를들어 2107년에는 개인에 대해서 모두 11,547건이 기소되었는데, 이 가운데 공판이 청구된 것은 613건으로 전체의 4.64%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10,934건 (82.91%)은 약식기소되었고, 법인에 대해서도 총 5,571건 중 265건(4.23%)이 공판청구, 5,306건 (84.76%)은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표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개인, 법인)에 대한 검찰의 처리 (2007-2017)

년도	계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 인 증자		
		기소 (소계)	구공판 구속	구약식 불구속	불기소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관소권 없음	
2007	4,490	3,487 (77.66)	3 (0.07)	93 (2.07)	3,391 (75.52)	1,000 (22.27)	396 (8.82)	570 (12.69)	- (0.76)	34 (0.76)	3 (0.07)	-
2008	4,251	3,248 (76.41)	2 (0.05)	172 (4.05)	3,074 (72.31)	995 (23.41)	359 (8.45)	578 (13.60)	- (1.36)	58 (1.36)	8 (0.19)	-
2009	4,307	2,951 (68.52)	2 (0.05)	192 (4.46)	2,757 (64.01)	1,330 (30.68)	530 (12.31)	753 (17.48)	1 (0.02)	46 (1.07)	23 (0.53)	3 (0.07)
2010	2,563	1,688 (65.78)	- (0.00)	67 (2.61)	1,619 (63.17)	865 (33.75)	445 (17.38)	396 (15.45)	1 (0.04)	23 (0.90)	6 (0.23)	6 (0.23)
2011	4,424	3,112 (70.34)	3 (0.07)	106 (2.40)	3,003 (67.88)	1,288 (29.34)	593 (13.40)	684 (15.01)	- (0.00)	41 (0.93)	14 (0.32)	-
2012	11,158	9,089 (81.48)	2 (0.02)	215 (1.93)	8,872 (79.51)	2,048 (18.35)	1,294 (11.60)	693 (6.21)	- (0.00)	61 (0.55)	20 (0.18)	1 (0.01)
2013	10,753	8,903 (82.80)	1 (0.01)	303 (2.82)	8,599 (79.97)	1,792 (16.87)	1,142 (10.62)	573 (5.33)	- (0.00)	77 (0.72)	52 (0.48)	6 (0.08)
2014	9,048	7,508 (82.98)	3 (0.03)	405 (4.48)	7,100 (78.47)	1,408 (15.54)	695 (7.68)	640 (7.07)	- (0.00)	71 (0.78)	126 (1.39)	6 (0.09)
2015	8,283	6,940 (83.79)	5 (0.06)	459 (5.54)	6,476 (78.18)	1,238 (14.95)	551 (6.65)	623 (7.52)	- (0.00)	64 (0.77)	95 (1.15)	10 (0.12)
2016	11,789	10,514 (89.16)	4 (0.03)	493 (4.18)	10,017 (84.97)	1,108 (9.40)	544 (4.61)	492 (4.17)	- (0.00)	72 (0.61)	164 (1.39)	3 (0.03)
2017	13,187	11,547 (87.56)	1 (0.01)	612 (4.64)	10,934 (82.91)	1,549 (11.75)	892 (6.76)	611 (4.63)	- (0.00)	45 (0.35)	89 (0.67)	2 (0.02)

출처: 범죄분석(대검청청)  
\* ( ) 안은 %

년도	계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 인 증자		
		기소 (소계)	구공판 구속	구약식 불구속	불기소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관소권 없음	
2007	1,998	1,564 (78.28)	- (0.00)	30 (1.00)	1,544 (77.28)	433 (21.67)	187 (9.36)	246 (12.31)	- (0.00)	- (0.00)	1 (0.05)	-
2008	1,798	1,387 (77.14)	- (0.00)	54 (3.00)	1,333 (74.14)	411 (22.86)	164 (9.12)	243 (13.52)	- (0.00)	4 (0.22)	- (0.00)	-
2009	1,851	1,265 (68.34)	- (0.00)	69 (3.73)	1,196 (64.61)	575 (31.06)	246 (13.29)	322 (17.40)	1 (0.18)	6 (0.32)	9 (0.49)	8 (0.11)
2010	1,132	690 (60.95)	- (0.00)	22 (1.94)	668 (59.01)	440 (38.57)	233 (20.58)	205 (18.11)	- (0.00)	1 (0.09)	1 (0.09)	1 (0.09)
2011	1,848	1,248 (67.58)	- (0.00)	31 (1.68)	1,217 (65.85)	589 (32.36)	316 (17.06)	282 (15.26)	- (0.00)	1 (0.05)	2 (0.11)	-
2012	9	1 (11.11)	- (0.00)	- (0.00)	1 (11.11)	8 (88.89)	1 (11.11)	7 (77.78)	- (0.00)	- (0.00)	- (0.00)	- (0.00)
2013	1	1 (100.00)	- (0.00)	- (0.00)	1 (10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2014	4,065	3,430 (84.38)	- (0.00)	176 (4.31)	3,255 (80.7)	695 (14.64)	367 (9.03)	327 (5.56)	- (0.00)	1 (0.02)	33 (0.81)	7 (0.17)
2015	3,804	3,244 (85.28)	- (0.00)	191 (5.02)	3,053 (80.26)	623 (13.76)	296 (7.78)	218 (5.78)	- (0.00)	- (0.00)	9 (0.84)	5 (0.13)
2016	5,534	5,015 (90.62)	- (0.00)	209 (3.76)	4,806 (86.84)	468 (8.46)	289 (5.93)	176 (3.16)	- (0.00)	3 (0.05)	50 (0.90)	2 (0.02)
2017	6,260	5,571 (88.99)	- (0.00)	265 (4.23)	5,306 (84.76)	664 (10.61)	443 (7.06)	317 (3.47)	- (0.00)	4 (0.06)	23 (0.37)	2 (0.03)

출처: 범죄분석(대검청청)  
\* ( ) 안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해 대부분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이를 불법과 책임이 미미한 경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도 당연히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그런데 산안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재산형이 부과되는 것은 약식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예컨대 역시 2017년 산안법 위반범죄에 대해 제1심 법원은 모두 710건을 처리하였는데, 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4건에 지나지 않고 137건이 집행유예, 478건이 재산형이 부과되어 전체의 2/3 이상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10년간의 통계를 보아도 이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표 3>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처리 (2007-2017)

단위: 명/%

년도	접수	처리(선고)								
		합계	유기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면소	공소 기각	기타
2007	349	305	1 (0.33)	28 (9.16)	205 (67.21)	13 (4.26)	13 (4.26)	-	-	45 (14.75)
2008	430	391	1 (0.26)	36 (9.21)	278 (71.10)	22 (5.63)	24 (6.14)	-	-	30 (7.67)
2009	407	432	3 (0.69)	56 (12.96)	281 (65.05)	30 (6.94)	32 (7.41)	-	-	30 (6.94)
2010	408	367	2 (0.54)	52 (14.17)	225 (61.31)	14 (3.81)	29 (7.90)	1 (0.27)	-	44 (11.99)
2011	392	467	5 (1.07)	40 (8.57)	305 (65.31)	21 (4.50)	34 (7.28)	-	2 (0.43)	60 (12.95)
2012	526	448	2 (0.45)	44 (9.82)	302 (67.41)	18 (4.02)	29 (6.47)	-	-	53 (11.83)
2013	685	639	3 (0.47)	50 (7.82)	425 (66.51)	30 (4.69)	38 (5.95)	1 (0.16)	-	92 (14.40)
2014	645	596	5 (0.84)	48 (8.05)	416 (69.80)	11 (1.85)	49 (8.22)	-	-	67 (11.24)
2015	751	740	3 (0.41)	119 (16.06)	513 (69.32)	12 (1.62)	42 (5.66)	4 (0.54)	-	47 (6.35)
2016	717	720	4 (0.56)	109 (15.14)	463 (64.31)	23 (3.19)	53 (7.36)	-	-	68 (9.44)
2017 (58)	764	710	4 (0.56)	137 (19.30)	478 (67.32)	12 (1.69)	21 (2.96)	-	-	58 (8.17)

출처: 사법연감(법원행정처)

\* ( ) 안은 %

그렇다면 선고된 형량은 충분할까. 김성룡 등의 연구<sup>28)</sup>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안법 위반으로 제1심 법원에 의해 징역이 선고된 경우 그 평균기간은 10.9개월, 금고의 경우에는 9.9개월이었다고 한다. 또 징역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전체 64명 가운데 30명이고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 13명,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이 7명으로 약 절반 정도의 피고인에 대해서 1년 미만의 단기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김성룡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2018, 157-159쪽

<표 4> 산안법 위반 사범의 징역형 처벌 수준 (제1심, 2013-2017)

단위: 명/개월

구분	징역기간			금고기간		
	빈도 (명)	평균 (개월)	최소/최대 (개월)	빈도 (명)	평균 (개월)	최소/최대 (개월)
최근 5년(전체)	64	10.89 (6.118)	3/28	22	9.91 (4.638)	4/18
2013년	14	13.86 (8.282)	4/24	2	12.00 (.000)	12/12
2014년	14	11.00 (5.588)	4/24	8	14.50 (3.817)	10/18
2015년	13	8.77 (3.961)	4/18	4	6.50 (2.517)	4/10
2016년	13	9.69 (6.473)	4/28	3	7.33 (2.309)	6/10
2017년	10	10.90 (4.332)	3/16	5	6.00 (.000)	6/6

\* ( ) 안은 평균, 최소값/최대값

단위: 명/%

구분	징역기간(N=64)		금고기간(N=44)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6개월 미만	8	12.5	1	4.5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	46.9	13	59.1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13	20.3	4	18.2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7	10.9	4	18.2
2년 이상	6	9.4	-	-

정식 재판 선고형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어떨까. 그 형량이 과히 무겁지 않은 것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위와 같은 기간 개인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21만원, 법인에 대해서는 448만원이었으며, 이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인 경우가 각각 46.5%(780명), 46.6%(556개)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전체 사건의 80% 이상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평균 벌금액은 아마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표 5> 산안법 위반 사범의 벌금형 처벌 수준 (제1심, 2013-2017)

단위: 명/개/%/만원

구분	자연인			법인		
	빈도 (명)	평균 (만원)	최소/최대 (만원)	빈도 (명)	평균 (만원)	최소/최대 (만원)
최근 5년(전체)	1,678	420.66 (305.640)	10/ 3000	1,193	447.95 (679.757)	30/ 2000
2013년	289	329.93 (318.145)	10/ 3000	194	346.39 (422.760)	30/ 3000
2014년	318	415.82 (304.877)	30/ 3000	241	410.12 (291.721)	30/ 1500
2015년	311	411.58 (289.843)	30/ 2000	287	444.32 (284.932)	30/ 2000
2016년	321	443.93 (309.922)	30/ 2000	272	501.54 (488.205)	30/ 5000
2017년	439	420.66 (305.640)	30/ 3000	199	524.77 (1427.990)	50/ 20000*

\* 최대벌금액 2억 원인 사건은 2017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는 형광램프를 생산하는 법인의 생산설비 등 철거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12명으로 하여금 업무상 과실로 인한 수은중독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01.11 선고 2016고단4942 판결임)



단위: 명/개/%/만원

구분	자연인 (N=1,678)	법인 (N=1,194)
1백만원 미만	121	87
	7.2%	7.3%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780	556
	46.5%	46.6%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651	457
	38.8%	38.3%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23	87
	7.3%	7.3%
3천만원 이상	3	7
	0.2%	0.5%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요컨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산안법 위반 범죄는 상당수 약식사건으로 처리된다.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실형은 매우 적은 사건에 대해서만 집행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그 평균 액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모두 500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산안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 특히 기업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이것은 거의 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없는 수준이다. 개인에게 선고되는 자유형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해 이렇게 가벼운 형벌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 의무위반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법 규정(산안법 제167조, 제168조)에 비추어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한 편으로는 검찰이 산안법 위반 사실이 잘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일반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의 양형기준이 대체로 지금까지의 법원의 선고형 수준을 반영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결국 검찰과 법원 모두 산안법 위반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표 6>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죄와 비교)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월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 2. 시민재해

한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일반 재해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대형참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기업의 경영자에 대해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반복해서 지적되어 왔는데, 여기서 그 자세한 내용을 모두 살필 수는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몇 사건에 대해서만 그 처벌의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 세월호 사건 (2014. 4. 16, 295명 사망, 9명 실종)

유대균(청해진해운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 주주)	징역 2년
유병일(청해진해운 고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한식(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청해진해운 상무이사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2014. 2. 17, 10명 사망, 194명 부상)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업본부장	금고 1년 6월
마우나오션 리조트 총 지배인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마우나오션 리조트 시설팀장	금고 1년 6월
건설공사 설계감리자	금고 1년 6월
(원청) 시공사 대표이사	무죄
(원청) 시공사 현장소장	징역 1년 6월
(하청1) 시공사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하청2) 시공사 회장	금고 1년 6월
(하청2) 시공사 전무	금고 1년 6월
(하청2) 시공사 상무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재하청) 시공업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건 (2013. 7. 18, 5명 사망)

유스호스텔 대표이사	징역 6월
유스호스텔 이사	징역 1년
코오롱트레블 대표이사	무죄
해병대 캠프 대표	금고 1년 6월

○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 사건 (2005. 10. 3, 11명 사망, 145명 부상)

국제문화진흥협회 회장	징역 1년
국제문화진흥협회 실무부회장	징역 2년 6월
상주시장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상주시 행정지원 국장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상주시 새마을 과장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2003. 2. 18, 192명 사망)

대구 지하철 공사 (법인)	벌금 1,000만원
대구 지하철 공사 대표이사	무죄
1079호 기관사	금고 4년
1080호 기관사	금고 4년

### III.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 1. 범죄구성요건의 확대 - ‘안전범죄’의 도입과 ‘안전의무’의 창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기업이나 그 경영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보다 우선 바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지금까지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약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강력한 개발정책 아래에서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그것이 설령 목숨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희생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생명과 건강, 안전에 대한 권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가장 1차적인 기본권이며 이것은 특히 위험한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험사회’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다소간의 위험을 수반하는 시설을 - 예컨대, 교통수단 - 이용해야 하는 세상이므로 이러한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처벌법은 단지 이렇게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예전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산안법에 특정한 의무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지난 2019년의 개정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10억원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형량이 상향조정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을 잘 적용하여 기업이나 경영자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검찰이나 법원을 설득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혹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산안법의 법정형을 더 높이면 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기업처벌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기업에 대한 벌금이 10억원 이하로 높여 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다고는 하기 어렵고, 또 특히 기업의 고위경영자의 산안법 위반사실이 현실에서 잘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산안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위반이 모두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즉 이 법률의 제175조는 사업주의 여러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유형도 포함되어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산안법 제14조 이하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로 하여금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고(제14조), 사업주에게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하며 발생한 재해사고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구체적인 작업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며 나아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등이다(제15조 이하). 말하자면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은 기업에게 일종의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구조적인 책임에 관계되는 것이다.<sup>29)</sup>

29)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산안법 제정 당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산안법 개정에서 당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던 행정형벌의 질서벌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입법취지,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동 제도가 현실적으로 기능 부전이었던 상황이 가미되어, 옥석을 가리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포럼 제16호(2015), 89쪽.

또 산업재해가 아닌 일반 시민재해인 경우에는 당연히 산안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에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해당 형벌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기업이나 관련책임자의 불충분한 처벌의 원인이 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재해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업과 경영자의 안전조치의무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방식의 특별법을 구상할 수 있다. 그 의무를 어디까지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산안법을 비롯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철도안전법과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이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혹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친 안전의무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무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인 적용은 실제 사례에서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그 구성요건으로 이같은 일반적인 의무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sup>30)</sup>

30) 이 조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Meaning of “relevant duty of care”

- (1) A “relevant duty of care”, in relation to an organisation, means any of the following duties owed by it under the law of negligence -
- (a) a duty owed to its employees or to other persons working for the organisation or performing services for it;
  - (b) a duty owed as occupier of premises;
  - (c) a duty owed in connection with -
    - (i) the supply by the organisation of goods or services (whether for consideration or not),
    - (ii) the carrying on by the organisation of any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perations,
    - (iii) the carrying on by the organisation of any other activity on a commercial basis, or
    - (iv) the use or keeping by the organisation of any plant, vehicle or other thing;
  - (d) a duty owed to a person who, by reason of being a person within subsection (2), is someone for whose safety the organisation is responsible.

한편 이렇게 일반적인 의무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영국이나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이들 조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자신의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일반적 책임

(1)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근로 중인 자신의 모든 직원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고용주의 의무이다.

(2) 전항에서 규정한 고용주의 의무의 일반적 책임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a)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위험이 없는 근로를 위한 설비 및 시 스템의 공급 및 유지

(b) 물품 및 물질의 사용, 취급, 보관 및 운송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하는 여하한 조치

(c)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의 직원들의 근로 중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육, 훈련 및 감독의 제공

(d) 고용주가 통제하는 여하한 근로 장소에 대해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위험이 없는 상태의 유지 및 그 장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위험이 없는 출입 수단의 제공 및 유지

(e)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충분한 복지시설 및 안전 조치가 갖추어져 있는 근로 환경의 제공 및 유지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고용주는 자신의 직원들의 근로 중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자신의 일반적 정책 및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현행 조직과 체제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시의 적절하게 수시로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서면과 수정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직원들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다. (이하 생략)

호주 빅토리아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요컨대 단순히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범죄에 대해 충분한 응보와 예방이 달성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의무를 기업과 경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안전범죄’의 창설, 그리고 이를 위한 ‘안전(조치)의무’의 도입이라고 할 만하다.

## 2. 기업의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그 명칭대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하였지만 현행 산안법에도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 즉 이른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그 형량도 예전보다는 높여 규정되었다. 그렇다면 기업처벌법의 ‘기업처벌’의 의미는 이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 1) 기업처벌의 ‘독립모델’

첫째, 기업처벌법에서 말하는 기업의 책임은 독자적인 것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기업의 책임이 ‘독자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 기업의 구성원, 즉 대표이사나 종업원, 사용인, 대리인 등의 형사책임과는 별개의 독립된 것이라는 뜻이다. 종래 법인, 즉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른바 ‘중속 모델’로 이를 설명해 왔다. 형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기업이(“단체는 죄를 짓지 못한다”) 그 구성원의 책임을 대신 지거나 -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 혹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의 책임을 곧바로 기업의 책임이라고 의제하는 - 동일시 이론(identification principle) - 방식으로 이를 구성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그 의사결정구조가 ‘탈중심화(decentralization)’ 혹은 ‘분권화’됨에 따라 이러한 생각은 크게 도전을 받는다. 누가 기업의 최종의사를 결정했는지, 누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기업의 책임과 관련한 ‘독립모델’ 혹은 ‘총합적 접근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1)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피고용인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위협이 없는 노동 환경을 제공, 유지해야 한다.

형벌: 자연인에 대해서는 1800 형벌 단위, 법인에 대해서는 9000 형벌 단위

(2) 고용주가 다음 각호의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못하면 제(1)항에 위반한 것이 된다.

(a)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위협이 없는 노동 시설과 체계를 제공 및 유지할 것

(b)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시설 및 물질의 사용, 처리, 저장 및 운반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위협이 없도록 할 것

(c)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고용주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로 유지할 것

(d)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고용주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피고용인의 복지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제공할 것

(e) 피고용인들이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로 노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지시, 훈련, 감독을 제공할 것

(3) 제(1)항과 제(2)항에서,

(a) 피고용인은 고용주와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 및 이 독립적 계약자의 피고용인을 모두 포함한다.

(b) 고용주의 의무는, 고용주가 통제하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통제를 제한하거나 없애려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통제가 가능했을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주와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 및 이 독립적 계약자의 피고용인에게도 적용된다.

(4) 제(1)항에 위반한 행위는 정식기소 범죄이다.

(holistic approach)'이 강조된다. 전체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책임문제를 보아야 하고, 그 구성원 중 아무도 특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때라도 기업의 독자적인 책임추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생각은 안전문제에 대한 기업의 구조적 책임이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안전학 분야에서 개인이 유발하는 사고보다 '조직이 유발하는 사고'가 그 중요도와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조직유발사고는 단순히 이에 관련된 몇몇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배경을 갖는 것이라는 것 등이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32)</sup> 또 같은 문제는 안전범죄에 관한 사법적 대응에 대한 비판에서도 드러나는데, 존스톤(Johnstone)에 의하면 안전범죄는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개인화(Individualisation)'되고 '탈맥락화(decontextualisation)'된다.<sup>33)</sup> 여기에서 '개인화'란 행위자 (또는 피해자) 개인의 책임만이 강조되는 것, 그리고 '탈맥락화'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누적된 여러 배경적 원인이 사상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통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기껏해야 개인의 '과실'에 의한 것, 혹은 심지어 사망자나 피해를 당한 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돌려진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혹은 예견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운, 다만 일회적인 '사고'였음이 강조된다. 나아가 사건 이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개선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적 맥락을 사상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과정이 포함하고 있는 체계적 위험이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게 하는 이윤추구에의 압력, 또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체계의 확립 등은 발생한 범죄결과와는 별 상관없는 문제가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범죄와 관련하여 이것은 무엇보다 '안전시스템의 확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런 점에서 위에서 제기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의무'의 도입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기업의 독자적이고 구조적인 책임은 그 처벌과 관련하여 '독립모델'을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 기업의 독립적인 책임이 확정되면 그 구성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업만을 독자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업처벌과 관련한 우리의 양벌규정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기업은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이 없으며 다만 그 구성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 형법학과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기업처벌에 대한 독립모델을 곧바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와 같은 기업의 처벌방식은 다만 입법적인 기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절차를 거쳐' 혹은 '누구의 책임을 전제로' 기업이 처벌되는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즉 '어떤 불법을 대상으로' 기업이 처벌되는가 하는 것, 다시 말해 범죄구성요건의 내용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새로운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기업 자신의 독자적인 안전의무를 확립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는 독립모델이 수용되지 못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

31) 법인처벌 이론의 변천과정에 대한 요약된 소개로는 Mark Pieth & Radha Ivory, "Emergence and Convergenc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Principles in Overview", Mark Pieth & Radha Ivory 엮음,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Emergence, Convergence, and Risk*, Springer(2011), 6면 이하

32) 이에 관해서는 James Reason, *Managing the Risks of Organizational Accidents*, 박주현 옮김, 인제는 이제 그만, GS 인터뷰전, 2014, 3면 이하

33) Richard Johnstone, "Work health and safety and the criminal law in Australia", *Policy and Practice in Health and Safety* 11(2)(2013), 30쪽

기업처벌법의 기업처벌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에서 찾을 수 있다. 종래 기업에 대한 처벌은 주로 벌금형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금전적 제재는 결국 기업 자신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주주나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이른바 ‘유출효과(spillover effect)’). 또 기업은 벌금액 만큼을 상품의 가격인상분에 반영하거나 회계상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역시 소비자나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다.

또 반대로 기업에 대한 벌금이 과연 장래 기업의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가 하는 점도 지적된다. 통상 기업은 개인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벌금액도 이에 비례하여 많아져야 할 것인데, 대개 개인과 똑같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양벌규정 하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진다. 산안법 개정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에 대한 벌금이 10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액수가 기업들에게 충분한 위하력을 갖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그렇다고 벌금액을 마냥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지금까지의 관행과 자유형과의 균형을 생각할 때 기업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도의 높은 벌금형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설령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이 되거나 혹은 실제 선고된 벌금을 기업이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른바 ‘예방의 함정(deterrence trap)<sup>34)</sup>).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한 형벌이 갖는 한계를 전제할 때, 새롭게 주목되는 것이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어 왔다. 즉 ①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 - 이 때에는 장래의 범죄예방을 위해 법인 내부의 특정한 조직적 조치들이 부수조건으로 요구된다 -, ② 범죄사실 공표명령 - 특정한 매체에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할 것을 명령한다 -, ③ 사회봉사명령 - 법인에게, 예컨대 자선 기부와 같이, 일반 공중에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 ④ 주식벌금(equity fine) - 국가가 투자한 주식을 국가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 -, ⑤ 특정한 기업활동의 자격제한 - 예컨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공계약의 실행중지 및 참여 금지, ⑥ 법인의 해산 등이다.

이러한 처분들은 우리의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며 또한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35)</sup>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내용 혹은 이에 수반되는 조건으로는 첫째, 기업 내부에서 범죄에 직접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을 기업 스스로가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 둘째,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 내부의 관행이나 절차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조건은 각각 혹은 병과하여 부과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인 기업의 내부적 징계 요구가 있는 때에 기업 혹은 기업 내부의 담당자는 i) 범죄가 일어난 상황과 이에 직접 관련된 사람 및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 등을 조사하고 ii) 범죄에 관련되었음이 밝혀진 임원이나 종업원 등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며 iii) 이상의

34) 예방의 함정이란 낮은 형벌을 부과하면 예방의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높은 형벌을 부과하면 피고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형벌 자체가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모순에 빠진 상황을 말한다.

35) 이하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내용은 Brent Fisse, *Cartel Offences and Non-Monetary Punishment: The Punitive Injunction as a Sanction against Corporations*, in Caron Beaton-Wells & Ariel Ezrachi (ed.), *Criminalising Cartels - Critical Studies of an International Regulatory Movement*, Hart Publishing, Portland, 2011, 325면 이하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조치를 상세히 기록한 ‘이행보고서(Compliance report)’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 두 번째 조직적 예방조치 명령에 대해서도 기업 혹은 내부 담당자는 범죄행위를 억제 내지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역시 그 상세한 내용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범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예방조치명령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같은 보호관찰의 조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사, 대리인, 종업원에게도 지워진다. 그러므로 기업의 이사진 가운데에서 이러한 의무이행을 전담하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에게는 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주의를 다할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은 개선이 필요한 기업 내의 특정 부문 혹은 특정 절차를 직접 변경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마치 개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와 같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처벌하고 이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특별예방효과를 의도한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기업에 대한 벌금형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기업처벌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 3. (고위) 경영자의 처벌

하지만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기업에 대한 처벌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기업 경영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다. 특히 여전히 최고 경영자가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우리 현실에서는 경영자 처벌의 의미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자에 대해서도 현행 산안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범죄행위, 즉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경영자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 문제는 그와 같은 경영자의 범죄 관여 사실이 있었다는 것, 또 그에 대한 고의나 과실, 인과관계 등의 범죄성립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탈중심화되고 분산화된 현대 기업의 의사결정구조, 특히 거대기업의 업무구조 하에서 이를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이에 따라 고위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는 경우는 실제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을 현장의 행위자와는 별도의 것으로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마치 양벌규정에서 법인에 대한 것과 비슷하게 현장 종업원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자신이 감독하는 부하직원들이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형법적으로는 이를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보증인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의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는지, 또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형벌까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sup>36)</sup> 여하튼 이러한 방식의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양벌규정에 법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관리·감독 의무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을 두는 방법이 가능하다(이른바 ‘3벌규정’).<sup>37)</sup> 다만 여

36) 기업범죄에서 고위관리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이론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원, “기업에 의한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경남법학 제12권 제1호(1996), 163쪽 이하; 최정학, “환경형법 벌칙규정의 문제점”, 형사정책 제31권 제4호(2020), 55-58쪽을 참조

37) 예컨대 현재의 양벌규정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꾸면 될 것이다.

양벌규정 개정안



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때 경영책임자 등의 부작위감독책임은 현장 행위자의 범죄와는 별개의 그의 ‘독자적인’ 범죄책임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 기업처벌법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의무를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똑같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 때 기업의 독자적인 의무란 대표적으로 ‘안전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것일 텐데, 이러한 의무는 사실 현행법에 의해서도 경영책임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상법과 기타 여러 법률에 의해 기업의 전체적인 조직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이 의무에 ‘안전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현장의 행위와는 별개로 기업이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즉 ‘독립모델’), 경영책임자에게도 직접행위자나 중간관리자의 처벌과는 별도의 그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

기업처벌법은 이와 같은 안전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주체로 기업과 함께 기업의 고위 경영자를 설정한다. 이것은 기업에게 요구되는 독자적이고 구조적인 책임을 기업 경영자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현대의 안전범죄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배경을 갖는다. 따라서 그 원인 방지와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불가피하게 이러한 성격을 띠어야 하고 따라서 그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업이지만 기업경영자에게도 이러한 책임은 확대될 수 있다. 그는 안전문제를 포함한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 이렇게 경영자에게 명시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배된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다. 위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대로 대규모화하고 복잡한 기업의 구조에서 최고 경영자가 현장의 안전의무까지 모두 담당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처벌법을 만들고 여기에 안전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무가 기업의 경영자에게 직접 있음”을 또 “이것은 하위관리자에게 위임될 수 없는 것임”<sup>38)</sup>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 기업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의사결정구조가 여러 단계라거나 하는 등의 - 어떠한 이유로도 기업의 경영자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부터 면책될 수 없다. 또 이 의무의 위반이 사상사고와 같은 재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때에는 민사나 행정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은 현장의 행위자나 중간 관리자의 책임과는 별개의 경영자 자신의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경영자 처벌은 안전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매우 크리라고 기대된다. 특히 경영자에게 부과되는 자유형은 벌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가 갖는 한계를 - 기업에 의해 ‘비용’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 -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화이트 칼라(white collar) 범죄인들이 느끼는 ‘충격효과(shocking effect)’를 극대화할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 피고인이 “그 동안 기

---

① 범인의 대표자나 범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범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범인 또는 개인에게도 ... 형을 과한다. 다만, 범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범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때에는 그 범인의 대표자에게도 ... 형을 과한다. 다만 범인의 대표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범인 또는 개인 및 범인의 대표자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범인 내부에서 위의 범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를 다했을 경우 범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또는 본질적으로 그 발생을 곤란하게 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 이 의무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과 선임 및 적절한 통제가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정학, 위의 글, 58-62쪽.

38) Sue Streets, “Prosecuting Director and Managers in Australia: A Brave New Response to an Old Problem”, *Melbourne Univ. Law Review* 22(1998), 706쪽

업 경영을 통해 성실히 사회에 봉사해 왔다”거나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보이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책임이 감면되지 않고 재해에 책임이 있는 중대한 안전의무의 위반 범죄자로 법에 규정된 대로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산업현장의 부실한 안전조치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4. 산안법 개정 주장과의 비교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산안법의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안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관련 의무조항을 더 촘촘히 보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며 그 밖에 기업처벌법이 요구하는 여러 사항들을 개정법률에 담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안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 기업처벌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첫째, 새로운 법률은 그 적용대상으로 교통수단 등을 포함한 위험시설에서의 안전사고와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하자로 인한 인명피해 등 시민재해를 포괄하고 있다. 말하자면 위험한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중대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산안법은 사업장에서의 여러 안전의무를 규정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한다. 기타 철도안전법과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은 교통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의무 및 형벌을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행정법률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기업의 생산 또는 용역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 특히 그 위반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것을 기업의 ‘안전범죄’로 범주화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기업과 그 경영자에게 안전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는 독자적인 처벌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기업처벌법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재해가 더 이상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범죄’임을, 그리고 그 책임이 현장의 행위자나 안전관리자에게서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의 경영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안전범죄 처벌법’인 것이다.

이렇게 단일한 처벌법을 두지 않고 여러 법률들의 의무규정과 처벌조항을 보완하는 방법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 모든 안전관련 법률의 의무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 즉 기업과 경영자의 구조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지 -, 또 그 위반에 대한 형량은 서로 균형이 맞는지 등의 문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별 법률마다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보다는 포괄적이고 단일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안전범죄에 대한 더 쉽고 효율적인 법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와 같은 형식적이고 법기술적인 사정 보다는 두 번째의 이유가 더욱 중요한데, 그것은 이 법이 담고 있는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의 내용과 취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으므로 불필요한 반복이 될 수 있지만, 산안법의 개정 주장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하고자 한다.

기업처벌법이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범죄에 대한 구조적인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사고 현장에서 누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나 안전관리자가 세세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안전의무의 위반에는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사기간을 단축하

라는 경영진의 요구나 안전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기업의 결정은 현장에서의 안전의무 준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 안전의무를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책임이 과연 현장의 노동자나 안전관리자에게 있는 것인가.

그런데 산안법과 같은 기존의 법률들은 전통적인 법리에 따라 사고의 책임을 대부분 현장의 직접 행위자나 안전관리자에게 돌림으로써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한다. 혹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 경영자의 책임을 따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때에도 산안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그의 고의 의무위반행위 그리고 이것과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미 수많은 사람과 절차가 개입되어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경영자에게 이를 묻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결국 그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껏 일반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문제삼아 가벼운 형량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처벌법은 보다 포괄적인 안전의무를 상정하고 그 준수에 대한 책임을, 현장 행위자의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신과 최고 경영자들에게 곧바로 묻고자 한다. 이들이 기업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여기에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독립모델'에 따른 기업처벌의 실질적 의미이며 기업처벌법은 이를 기업의 경영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경영자나 기업은 이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 이제 민사법적 책임을 넘어 형법의 범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선언이자 생명과 안전을 무시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에 대한 우리의 법적 대응을 통계를 통해 간단히 점검해 보고 새롭게 제안된 기업처벌법이 담아야 할 원칙적인 내용을 안전의무의 창설, 기업의 처벌, 경영자의 처벌이라는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았다.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쟁점들도 아직 남아있다. 예컨대 공무원 처벌의 문제나 하도급의 경우에 기업의 책임을 원천에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 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긴절한 주제들이다. 앞으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자세히 논의되고 각각에 대한 현명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믿는다.

반복되지만 기업처벌법의 제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와 같은 일들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기업과 경영자의 '범죄'행위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을 포함한 법률가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본문에서 살펴본 듯이 산안법 위반 범죄는 - 사실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환경범죄와 같은 다른 기업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지금까지 범죄라기 보다는 경미한 과실범이나 행정법 위반행위 정도로 다루어져 왔다. 형법에 규정된 반도덕적인 '자연범(mala in se)'이 아니라 행정상 필요한 '법정범(mala prohibitu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업처벌법은 이러한 관점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자들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범죄인'으로, 그것도 중대한 범죄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다수의 피해를 수반하는 참사가 나면 형량을 다소 높이는 미봉책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질적인 책임자인 기업과 경영자들은 갖은 수단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고 힘없고 나약한 노동자들의 희생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진 술 서

임 우 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 학 력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석사) 졸업

### □ 경 력

- 現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現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전문위원회 위원
- 現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 現 안전보건공단 미래대응위원회 위원
- 現 대한산업보건협회 비상임이사
- 現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 前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평가 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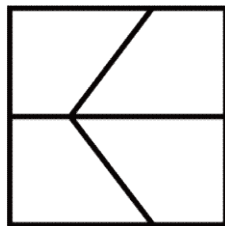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안)

2020. 12. 2



**KEF** 경총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설명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산재사고 통계를 보면 '14~'18년 5년간 평균 900명대 후반의 사고사망자수가 지난해 855명으로 감소하는 등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 선진국들에 비하면 산재사망 비중이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올해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경영계도 잘 알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사업주와 경영층에 대해 처벌만 강화하는 입법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동법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기업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 불감 조직문화, 경영층의 책임부재 등 사고의 원인을 기업 및 경영층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사업주의 책임 외에도 우리나라 산업발전 정도와 안전기술 수준, 전 국민의 안전문화 수준,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법률규정, 산재예방 행정 및 감독의 전문성 부족 등 국가 안전시스템의 한계, 민간 안전서비스 인프라 미흡,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한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을 포함한 국가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예방중심의 대책 수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처벌수위는 우리보다 훨씬 낮으나, 사전예방적 안전정책을 펼치면서 사망사고를 줄이고 있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금번에 국회에 발의된 3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선진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형벌규정과 사업주 및 경영층에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무위반을 근거로 무거운 형벌을 내리게 되는 동법안의 특성상 안전관리에 철저한 대규모 기업 등 안전우수 기업조차도 처벌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 특히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인 여건과 인력의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어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 2019년 전체 사고사망자의 94.4%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77.2%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주 및 원청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높고, 강화된 개정산안법이 시행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법안 심사과정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법안 조문별 문제점 >

### 1. 용어의 정의

#### <강은미 의원안>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7.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주가 법인이거나 기관인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로 종사자가 사상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장해등급 중중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라.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11.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중대재해의 범위가 모호하여 처벌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큼

- **(정의규정 모호)** 중대산업재해(박주만·이탄희 의원안) 정의규정인 제2조 제2호 내용 중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등의 범위가 모호하며 확정적이지 못함
  - 장해등급 중증요양 1-3급은 사고 후 의료수준 및 환자의 특성, 치료 및 재활상태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유동적 개념으로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으로 타당하지 않음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단순 재해를 은폐하였다고 하여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함
- **(부상자 및 질병사망 대상확대 문제점)** 부상자 발생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규정이 없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외 부상의 경우까지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사고 외 질병자까지 중대재해 처벌개념에 포함되어 지나치게 처벌대상이 확장됨
  - 현행 산안법은 중대재해의 개념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망 이외에 부상의 경우 실제 처벌하는 조항이 없음
  - 사고사의 경우 중대재해의 원인이 분명하나, 질병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심혈관계질환 등은 의학적, 역학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 측면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 진폐에 의한 사망의 경우, 현재 사업주와 관계없는 과거 작업환경 원인에 의한 것으로 중대재해 개념에서 제외되어야함

- 질병사의 경우 독성물질 중독 등 원인관계가 분명한 경우만 중대재해 개념에 포함되어야 함

〈참고〉 산재 질병사망자 수 세부 통계(고용노동부, 2019년 기준)

구분	사망자 수(명)	비고
○ 산재 사망자 수	2,020 = 855(사고) + 1,165(질병)	-
질병 사망자 수	1,165	-
· 화학물질 중독	· 61	(중)금속, 유기화학물 중독 등
· 진폐	· 402	과거 작업환경 원인(광업종사자)
· 뇌심혈관계질환	· 503	업무관련성 인과관계 불분명
· 기타	· 199	직업성 암, 피부질환 등 포함

□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포괄적임

- **(책임주의 원칙 위배)**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모두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지 이사에 해당하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안전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이사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무리
  - 단순히 ‘해당지위에 있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결과발생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자까지 형사처벌 한다는 점에서 책임주의 원칙에 심각히 위배됨
- **(경영책임자 규정 모호)**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강은미 의원안)’,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박주민, 이탄희 의원안)’가 어떠한자인지 모호함

## 2.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방지 의무

### 〈강은미 의원안〉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철도, 여객, 선박, 항공) 및 사업장에서 취급 중인 원료·제조물로 인해 사람(종사자, 이용자)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제65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성격상 처벌의 적용대상 및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그 의무가 더욱 포괄적임

□ 또한 유해·위험방지 의무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형벌법규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법인에 사실상 결과책임을 인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됨

○ (광범위·불명확한 의무 설정) 유해·위험방지 의무가 지나치게 광범위·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집행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큼

- 강은미 의원안은 사업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유해·위험방지를 추상적·개념적으로 정리하여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의무까지 확장하고,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을 규정하면서 강은미 의원안과 동일한(추상적·포괄적)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함

- 법안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는지 예측할 수 없음

· 사업주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법문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해·위험방지” 문구만으로는 의무의 범위가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음

· 이는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법리에 반하는 것임

※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예측 가능

- 사업주 의무가 불명확하면 집행기관 및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쉽게 개입될 수 있어, 국가의 형벌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수 있음

· 법 위반 여부가 자의적으로 판단되어질 경우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까지 예기치 않게 이 법에 따라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주 관리책임 한계)**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에서 위험방지 의무에 포함된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규정도 매우 복잡·방대하고 비현실적인 규정들이 적지 않아 현재도 사업주가 이를 완벽히 준수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규정만 673개 조문에 이르고, 조문별 세부기준만 수천 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함

- 산업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규정들이 적지 않아, 사업주가 안전규정을 모두 준수하기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사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없는 설비가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하도록 규정



〈사례 2〉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안전방망 등을 설치해야 할 추락위험 높  
이 기준이 현장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관리 및 직장 내 상황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묻고 있음
- 현장단위에서 이뤄지는 기술적·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여부는 사업주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음
- 직장 내 괴롭힘(박주민, 이탄희 의원안)도 사업주가 일일이 관리·감독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업주 및 현장관리자의 안전관리 역할

- (사업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직과 예산을 책정하여 현장관리자 등 각 책임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담당
- (현장관리자) 사업주가 결정한 안전보건 사항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이행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

- 사업주가 자신의 관리책임 범위 내에서 산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법 위반 적발 건수 사례> 2017년 00중공업 866건, 2018년 00전자 1,689건, 2019년 00제철 2,401건, 2020년 00중공업 521건

### 3. 도급과 위탁 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 의무

#### 〈강은미,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 제4조(도급과 위탁 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 ①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여러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한다), 위탁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 도급인 등에게 제3자와 공동으로 일률적 공동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실효성도 낮을 것임

- (관리범위 무한확장) 사업주의 실질적 관리범위 및 계약의 내용·성격에 대한 고려없이, 도급을 포함한 임대·용역·위탁 등 제3자와의 모든 계약에 사업주의 공동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그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됨
  - 원청이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담해야 할 제3자(임대, 용역, 도급 등)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함
  - 현행 산안법의 원청의 책임은 사내도급 등 사업주의 실질적 지배관리 범위 내의 장소에 국한하고 있는데, 원청이 실제 관리할 수 없는 사외도급을 포함하여 제3자와의 모든 계약관계에 대해 책임범위를 무한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과도함
  - 도급 등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한 업무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며, 원청보다 전문성을 지닌 하청업체도 많고, 또한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규모 기업과 도급계약 등을 맺는 사례도 많음
- (책임주의 원칙 위배) 사업주의 관리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3자와 포괄적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연대책임을 묻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전면 위배됨

- 도급을 준 원청의 책임이 해당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그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하청보다 클 수 없음
- **(안전효과성 결여)** 원·하청 간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청에게 공동의 의무를 부과할 경우 책임의 혼선을 야기하여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됨
  -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원·하청간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임
  - 원청에게 공동의무 등을 부여하면 오히려 하청은 원청에게 책임을 넘기고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발생
  -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원청에게 공동으로 부과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음
  -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은 원·하청에게 각각 자신의 역할에 맞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법원은 사고 발생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개별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4. 중대재해 발생 시 인과관계의 추정

###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인과관계의 추정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크고, 법률안 제5조 각호의 규정은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기도 어려움**

- **(무죄추정의 원칙위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방지의무 위반을 인과관계 추정으로 확정하는 것은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큼
- **(인과관계 추정과 무관한 조문 구성)** 박주민 의원안 제5조는 표제만 ‘인과관계의 추정’으로 되어있을 뿐, 그 내용은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 아님
  - 위험방지의무 위반 추정을 당해 사고와 관련된 사실이 아닌 과거 해당 기업의 위반행위(5년간 3회)를 표지로 하는 것은 일종의 성향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인과관계 추정내용과 무관함(제5조 제1호 관련)
  - 당해 중대사고의 원인이 과거의 법 위반과 관련이 없을 수 있음에도 과거의 법 위반 여부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이름으로 결과책임 부과 효과를 야기시키는 위헌소지가 있음

- 또한 당해 사고 이후의 증거인멸 등은 결과발생 후 거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당해 사고에서의 인과관계 존재의 증명과 관련된 사실이 아니라 결과발생과 이격된 시점에서 발생한 사후의 특정한 사실에 지나지 않아 인과관계와는 무관한 조항임(제5조 제2호 관련)

## 5.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 〈강은미 의원안〉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38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 제6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의 행위로 사망을 제외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2명 이상에 대하여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 기본 과실범 형태의 범죄행위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벌금 부과와 형의 장기·다액을 합산하는 경합범 가중특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현행 산안법의 법정형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고려해야 함

- (과실범에 대한 과잉처벌) 과실범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강은미 의원안>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벌금, <박주민 의원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볼 때 형량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함

- 하한형의 징역형 부과는 고의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범이나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상해치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적용하는 형벌 부과방식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의 법정형을 동일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임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형법 § 268)
- 법안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일지라도 균형성을 잃은 형벌의 지나친 강화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 (형법상 경합범 규정과 충돌) 사상자 수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다액을 합산하는 것은 형법상 경합범 체계와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형량이 무한정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고의범도 아니고 과실범의 경우에 피해자의 숫자는 그 행위자의 책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우연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인데 이러한 단순 합산가중은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임
  - 이전 법무부에서도 ‘다중인명피해 가중처벌법안’을 제안하였다가 이러한 이유로 동 법안을 사실상 폐기함
- (형벌체계의 균형성 상실) 기업경영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행위자 보다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맞지 않음
  - 법 위반의 직접 행위자가 아니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통제범위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징역 및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형벌임

- 또한 법을 위반해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행위자는 형이 합산되지 않는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만 형을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것도 형벌체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음









○ **(현행 산안법 법정형 고려)** 현행 산안법의 처벌규정이 이미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또다시 형벌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불필요

- 사업주(원청) 의무 및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20.1.16)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임

**<참고> 산안법 개정 전·후 사업주 및 원청 벌칙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1)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사업주 형사처벌	없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근로자(하청근로자) 반복 사망 시 사업주(원청) 가중처벌	없음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의 50% 가중
(3) 법인(원청법인) 벌금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참고> 선진외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수준 비교**

국 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사업주 처벌기준
 대한민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원 이하)
 일 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550만원) 이하의 벌금
 미 국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1,200만원) 이하의 벌금
 독 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영 국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 없는 벌금
 싱가포르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만싱가포르달러(1억7천만원) 이하 벌금형
 프 랑 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9천유로(1,170만원)의 벌금
 캐 나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캐나다달러(8,700만원)



- **(4중제재 부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보다는 훨씬 강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신체형에 대한 규정없이 법인에 대한 벌금형(상한없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자 개인 처벌(하한형 징역규정),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제재를 부과

**<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주요내용 비교**

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사업주 (도급인)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한설정 방식의 징역형(2년 또는 3년 이상) 또는 벌금형 부과</li> <li>· 상해 또는 사망 제외 중대재해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부과</li> </ul>	<p>(없음)</p> <p>(없음)</p>
법인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상 시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부과</li> <li>· 매출액의 10% 벌금 가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한 없는 벌금형</li> <li>※ 법 제정 이후 10년간 26개 기업에 부과된 벌금액 평균은 338,654파운드, '20.11.26 기준 약 5억 60만원</li> </ul>
행정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이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제재 병과 가능</li> <li>·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작업중지</li> </ul>	(없음)
징벌적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손해액의 3배 또는 5배 이상 부과</li> </ul>	(없음)

## 6. 법인 처벌

### 〈강은미 의원안〉 제6조(법인 등의 처벌)

- ①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 법인의 대리인·종사자·사용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한 때에는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 제7조(법인의 처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이 소유·운영·관리 또는 발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업재해를 발생시킨 때
- ②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 **업무상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20억원 이하 벌금과 매출액 대비 벌금을 가중하는 것은 위법성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과잉형벌이며, 안전의무 위반과 매출액 기준 벌금은 연관성이 없음**

- **(벌칙의 과도성 및 형평성 위배)** 동일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금액 수준(20억원 이하)이 현행 산안법(10억원 이하)보다 과중하며, 사망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액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벌칙 수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 전부개정 산안법( '20.1.16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하청근로자) 사망 시 법인(원청) 벌금 상향(1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또한 개인사업주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법인만 처벌하는 것

은 형평성에 반함

-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액 기준 벌금)** 유해·위험방지 의무로 처벌한 법인에 대해 추가로 벌금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형벌이며, 안전의무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
  - 매출액 기준의 제재는 경제적 의무 위반을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목적이며, 유해·위험방지 의무 위반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없음
  - 매출액 기준 벌금 부과는 위반행위(유해·위험방지 의무)와 결과책임(사상자 발생)이 동일함에도, 기업규모에 따라 벌금형의 상한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함
    - ※ <예시> 동일한 유해·위험방지 의무로 근로자 1명이 사망 시 기업규모에 따라 매출액이 100조(벌금액 상한 10조)인 기업과 100억(벌금액 상한 10억)인 기업의 벌금액 상한에 차이 발생
  - 법률안 통과 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임
- **(가중처벌사유의 불명확성)**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 ‘내부 사람의 안전의무 소홀을 조장·용인·방치한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명확함
-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 인정여부 선결)** 종사자등 행위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 형식이 아닌 법인에 대한 직접처벌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7.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 〈강은미 의원안〉 제6조(법인 등의 처벌)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1. 영업의 허가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 제7조(법인의 처벌)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의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5년 이하의 이행관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입찰자격 제한

###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지체 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 제13조(작업중지의 조치)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 과도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원이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추가로 병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

- (기업 영업활동 제약)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면서 법원이 추가로 해당사업의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 피해 정도(사상자 수, 사망·상해 여부)에 관계없이 사상자 발생으로 법인

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5년까지 영업을 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임

○ **(행정법 체계와 충돌)**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제재는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 행정기관의 장이 취해야 하는 행정조치임

- 현행 개별법에서 사망자 발생 기업, 안전관리기준 위반 업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한 만큼 법안에 별도의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함

· 산안법 제1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근로자 2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발주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소방서장이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②)

□ **안전보건교육 수강, 작업중지 규정은 현행 산안법과 중복됨**

○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사망사고 발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산안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안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병과 가능

○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이미 산안법에 제도화되어 있음

※ 경총이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기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액이 최소 600억원에서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액 손실, 근로자 임금손실, 하청업체 지급 휴업수당 등 직접 피해 금액만 조사)

○ 사고사망 발생 기업은 필수적으로 고용부의 감독을 받게 되며, 기업규

모에 따라 수천만원~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실정임

※ <사업장 감독 시 과태료 부과 사례> 2017년 00중공업 5억2천만원, 2018년 00전자 8억1,890만원, 2019년 00제철 1억4,681만원, 2020년 00중공업 1억5,200만원 부과

## 8.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강은미 의원안 (제8조),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 (제17조)>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 ①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 유죄 선고절차와 형의 선고를 위한 절차를 따로 지정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현행 사법체계와 전혀 맞지 않음

-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도입은 일반적인 형소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만 이를 도입할 이유가 불분명함

## 9.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

### 〈강은미 의원안〉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박주민 의원안(제18조), 이탄희 의원안(제19조)〉 손해배상의 책임

- ① 사업주나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도한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의 실질 손해를 넘어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3배 또는 5배 이상)까지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징벌적 배상제를 중대재해 발생사고에 적용한 해외 입법사례는 찾기 어려움**

- **(과잉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손해배상체계와 맞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형벌로서의 기능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과도함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여하고, 행정 제재(영업정지 요청 등)까지 병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잉처벌임

- **(산재적용 입법례 전무)**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한 제재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외국 입법례도 산업재해에 적용된 사례는 없음

- **(소송남발 우려)** 법률안 제정 시 거액의 배상급 지급을 기대한 무분별한

소송남발이 우려되며,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배상  
급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악화될 것임. 끝.





## 관련 법률안 및 청원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6.11.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2020.11.12.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2020.11.17.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0.9.22. 김미숙 외 100,000인)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7
----------	-----

발의연월일 : 2020. 6. 11.

발 의 자 : 강은미 · 신정훈 · 윤재갑  
김용민 · 용혜인 · 김남국  
심상정 · 류호정 · 이은주  
배진교 · 장혜영 · 황운하  
이용빈 · 권인숙 의원  
(14인)

##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책임을 아래로 위임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사건은 일선 현장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미봉되어 버림.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들 규정은 애초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중대재해 발생 시 벌금액조차 피해에 비해 극히 과소한 형편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임. 또한 김용균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감독의

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현행 형사법 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책임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 절하하도록 유도하는 등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입지 않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하여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을 입지 않도록 할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 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 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감독 또는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마.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위해 유죄 판결과 별도로 형의 선고를 분리하는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둬(안 제8조).

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함(안 제11조).

사.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안 제12조).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법인, 기관, 경영책임자 및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중이용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7.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주가 법인이거나 기관인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하여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도급과 위탁 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여러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한다), 위탁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 책임을 지게 된 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수탁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38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제6조(법인 등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종사자, 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3.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종사자, 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 내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의 허가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7조(공무원의 처벌)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인허가

제8조(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0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9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

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③ 제1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90
----------	------

발의연월일 : 2020. 11. 12.

발 의 자 : 박주민 · 강득구 · 강민정  
고민정 · 고영인 · 김남국  
김영배 · 김정호 · 김홍걸  
남인순 · 맹성규 · 민형배  
박홍근 · 변재일 · 설 훈  
송영길 · 신정훈 · 양어원영  
양정숙 · 오영환 · 우원식  
윤미향 · 윤영덕 · 윤준병  
이규민 · 이병훈 · 이소영  
이수진(비) · 이용빈 · 이장섭  
이재정 · 이정문 · 이해식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정필모 · 진성준 · 천준호  
최기상 · 최혜영 · 허 영  
홍기원 · 홍익표 · 홍정민  
의원(45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노동자 사망 수는 연 2400여명, 하루 7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임.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38

명의 목숨이 희생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삼포 시멘트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폐자재 재활용품 파쇄기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은 지난 수십 년간 고질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위와 같은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조직적·제도적 안전조치가 설계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침.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이에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

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 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제3자 또는 수탁자와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에 이름(안 제6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7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에서의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 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바.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중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함(안 제11조).

사. 이외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처벌사실 등의 공표,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로 종사자가 사상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장해등급 중중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라.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3. “중대시민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
6.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9.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발주”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는 발주
- 나. 조선사업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고정식 해양플랜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조, 개조,

정비, 변경 등에 관하여, 가목의 “건설공사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있는 자가 하는 발주

11.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12. “공무원”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제65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제4조(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6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의 행위로 사망을 제외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2명 이상에 대하여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⑤ 제4조 제1항의 제3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수탁자가 제3조의 의무이행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의무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또는 수탁자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본조의 처벌에서 면제한다.

제7조(법인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이 소유·운영·관리 또는 발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때

②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의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5년 이하의 이행관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입찰자격 제한

④ 법원이 제3항제3호의 이행관찰을 병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가할 것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대산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
2.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3.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4. 공익적 급부제공
5. 공무원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현장감독
6. 개선사항의 공개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지체 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등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자는 공중이용시설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자는 공중이용시설등에서 발생한 결함을 방치할 경우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출입 또는 사용의 제한·금지나 철거 등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제4항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대시민재해 중 사

망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대시민재해 중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준용규정) 중대시민재해에 관하여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보칙

제12조(공무원 처벌 특례) 다음 각 호 업무의 결재권자인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

협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  
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 및 인·허가

제13조(작업중지의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  
정을 준용한다.

제14조(영업정지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  
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  
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6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



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은 「형사소송법」의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다만, 국민양형위원에 당해 사건의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 재판장은 형의 선고 시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심사결과, 피해자 등의 의견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 심사 결과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제1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21
----------	------

발의연월일 : 2020. 11. 17.

발 의 자 : 이탄희 · 우원식 · 오영환  
윤미향 · 이정문 · 임호선  
이재정 · 양이원영 · 이용빈  
최혜영 · 강민정 의원  
(11인)

### 제안이유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안번호 제5290호)에 양형절차 조항을 추가 정비한 것으로 같은 법률안 심의 시 함께 심의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재사고와 관련 판사들이 선고하는 양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임.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하더라도 판사가 법정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효과가 실현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상식·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양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 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제3자 또는 수탁자와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에 이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에서의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를 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바.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중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함(안 제11조).

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무원이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이외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처벌사실 등의 공포,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로 종사자가 사상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장해등급 중중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라.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3. “중대시민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
6.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9.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발주”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는 발주
- 나. 조선사업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고정식 해양플랜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조, 개조,



정비, 변경 등에 관하여, 가목의 “건설공사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있는 자가 하는 발주

11.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12. “공무원”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제6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제4조(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6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의 행위로 사망을 제외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2명 이상에 대하여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⑤ 제4조제1항의 제3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수탁자가 제3조의 의무이행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의무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3자, 수탁자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본조의 처벌에서 면제한다.

제7조(법인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이 소유·운영·관리 또는 발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때

②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의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5년 이하의 이행관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입찰자격 제한

④ 법원이 제3항제3호의 이행관찰을 병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가할 것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대산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
2.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3.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4. 공익적 급부제공
5. 공무원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현장감독
6. 개선사항의 공개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지체 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등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자는 공중이용시설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자는 공중이용시설등에서 발생한 결함을 방치할 경우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출입 또는 사용의 제한·금지나 철거 등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제4항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대시민재해 중 사

망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대시민재해 중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준용규정) 중대시민재해에 관하여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보칙

제12조(공무원 처벌 특례) 다음 각 호 업무의 결재권자인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

협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  
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 및 인·허가

제13조(작업중지의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  
정을 준용한다.

제14조(영업정지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  
자 등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6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

18조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8조(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심리학·사회학·범죄학·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회부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양형위원후보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이 지정된 경우 국민양형위원 대표는 심의가 종료되면 국민양형위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양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심의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 국민양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민양형위원의 지정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자,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 민 동 의 청 원 서

등록일자	2020. 8. 26.		
동의기간	2020. 8. 26. ~ 2020. 9. 22.	국민동의 수	100,000
청원자	성명	김미숙	
제목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청 원 원 문

### [청원의 취지]

- 전태일 이후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및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 [청원의 이유 및 내용]

저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K-방역이 신뢰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코로나-19 사망의 8배가 넘는 2,400명의 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용균이도 현장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죽었습니다. 50년 전 전태일 노동자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쳤지만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2003년 대구지하철, 2014년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시민들의 재난 참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업장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입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의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또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받을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용균이도 원청이 정한 업무수칙을 다 지키면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

다. 대구지하철 참사도 기관사만 처벌받았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도 책임자들은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의 범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 운동에 많은 노동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